

#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송호영\*\*

---

## 〈차 례〉

---

- |                                   |                                |
|-----------------------------------|--------------------------------|
| I. 머리말 : 몇 가지 사례                  | V.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권분쟁의<br>해결방안 |
| II.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의미                | VI. 맺음말 : 약간의 제언               |
| III.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            |                                |
| IV.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br>절차·효과 |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스포츠단체가 부정행위를 한 소속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서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선수에 대해서 가한 징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선수 징계사건, 빙상연맹 도핑선수 징계사건, 쇼트트랙국가대표 안현수 아버지 징계사건, 축구대표단 음주징계사건 등을 소개하였다.

논문의 I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갖는 징계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문은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의 이념에서 찾고 있다.

논문의 II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에서 찾는다면, 징계권의 법적 성질은 그러한 사단자치권행사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규칙인 정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해서 규범설과 계약설의 대립이 있는데 필자는 정관을 다면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포츠단체의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본다면, 그 정관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징계는 일종의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즉 契約罰)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의 문제도 엄연히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논문의 IV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절차·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징계권행사의 요건으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가능성에 대한 합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적용의 금지, 선수의 귀책사유, 징계사항의 적정성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징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

---

\* “이 논문은 2007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07-000-0000-5900)”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적 범위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징계권행사를 관할하는 기구와 징계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포츠단체가 부가한 징계로 말미암아 선수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논문의 V에서는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권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필자는 그 해결방안으로 법원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지만, 조직의 팀웍이 강조되는 스포츠단체와 운동선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스포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제안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V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스포츠단체의 징계규범을 정비할 것과 징계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른바 시범케이스식의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를 통해서 선수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을 하였다.

## I. 머리말 : 몇 가지 사례

(가) 스포츠과학 및 체육평의회(ICSSPE)에서 공포한 스포츠선언에 의하면 스포츠는 “놀이성격의 신체적 운동이나 자기 힘의 한계를 시험하는 신체활동으로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형태의 신체활동”으로서, 그러한 신체활동은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지배된다.<sup>1)</sup> 따라서 스포츠선수는 자신의 스포츠활동이 제도화된 규칙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스포츠선수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경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별경기규칙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스포츠선수에게는 경기 외에서도 스포츠단체가 요구하는 일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한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경기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의 판단에 의해서 경기규칙상의 일정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러한 패널티는 경기자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이익에 그칠 뿐, 선수의 활동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경기자체의 운영에 해를 끼칠 만한 불이익한 행동을 하거나 경기 외에서 스포츠단체에서 선수에게 요구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수의 일탈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스포츠단체 차원에서 선수에게 일정한 징계를 가하게 된다. 그런데 스포츠단체가 선수에게 내리는 징계는 선수로 하여금 규칙 내지 규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와 선수 사이에 징계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일게 되는 대표적인 진원지 역할을 하곤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스포츠단체가 규칙이나 규정을

1) 손석정, 스포츠법학, 서울 태근, 2000, 25면.

위반한 선수에게 내리는 징계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징계의 행사요건·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러한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나) 오늘날 유명 운동선수는 사회적으로 “公人” 또는 “스타”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러한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일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규칙과 규정의 준수를 생명으로 삼는 스포츠계에서 유명 선수가 규정을 위반하여 스포츠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스포츠단체와 선수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관심에 의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본고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분쟁이 기사화되어 사회의 반향을 일으킨 몇몇 경우를 간단히 훑으로써, 선수징계에 관한 분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사례 1]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선수 징계사건

2006년 1월 6일 대한펜싱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팀 코치의 허락없이 경기력과 무관한 성형수술로 훈련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은 남현희에게 대표팀 전체의 기강확립차원에서 2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5년 라이프치히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인 남현희는 이로써 검을 접고 향후 2년간 국내외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sup>2)</sup> 이러한 연맹의 징계에 대해서 남현희는 항소를 하였다. 대한펜싱협회는 남현희측이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내로 상벌위원회를 소집, 징계수위를 재조정하기로 하였다.<sup>3)</sup> 이후 대한펜싱협회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여자 플뢰레 국가대표 남현희의 징계를 당초 선수자격정지 2년에서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로 낮췄다. 협회는 남현희가 소속 팀 감독의 지시 아래 경위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 진술로 사태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공로를 감안, 징계 수위를 낮춘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협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sup>4)</sup>

2) 스포츠서울 2006년 1월 8일자 인터넷신문기사 [여자펜싱, 성형수술로 훈련 등한시 한 선수 징계]에서 발췌.

3) 서울신문 2006년 1월 19일자 인터넷신문기사 [‘성형수술 징계’ 펜싱 남현희 항소]에서 발췌.

4) 문화일보 2006년 1월 26일자 인터넷신문기사 [‘성형과문’ 남현희 선수 징계 대폭 낮춰]에서 발췌.

#### [사례 2] 빙상연맹 도핑선수 징계사건

2006년 2월 3일 제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에 출전한 김 아무개 선수가 경기 뒤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트리암테렌 양성반응을 보였다. 트리암테렌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이뇨제다. 김선수는 양성반응 뒤 "대회를 앞두고 무릎이 아파 할머니가 복용하던 관절염 약을 경기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1봉지씩 2번 복용했다"며 복용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김선수는 중학생때부터 무릎이 아파 고생을 해온 터였다. 대한체육회와 연맹은 청문회 끝에 선수가 금지약물을 고의로 복용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선수도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상황이 바뀌었다. 연맹이 갑자기 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방침이라며 김선수에게 내린 징계(경고)를 없던 일로 하고 자격정지 2년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김선수 측이 자격정지 2년의 징계가 지나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2007년 8월 14일 CAS가 내린 판결은 기각이었다. CAS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한국에도 중재기구가 있으니 거기서 절차를 밟는 것이 온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sup>5)</sup>

#### [사례 3] 쇼트랙국가대표 안현수 아버지 징계사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난 4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연맹 부회장을 폭행했던 쇼트트랙 대표팀 안현수(한국체대)의 아버지 안기원(49)씨에 대해 1년 간 빙상연맹 주최 대회 출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빙상연맹은 18일 "최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친 뒤 조사내용을 토대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 씨에 대해 1년 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이미 안 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안 씨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향후 1년 간 빙상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대회 경기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중략) 빙상연맹은 "학부모에 대해 특별히 연맹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sup>6)</sup>

#### [사례 4] 축구대표단 음주징계사건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 기간 중 숙소 무단 이탈과 음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이운재(34·수원)·우성용(34·울산)·김상식(31·성남)·이동국(28·미들즈브러)에게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소속팀의 K-리그 경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5) SPORTS2.0 제69호 (발행일 2007년 9월 17일) 기사 [누가 무지한 것인가], 인터넷판 2007년 9월 21일자 기사([http://www.sports2.co.kr/news/news\\_view.asp?AID=177592](http://www.sports2.co.kr/news/news_view.asp?AID=177592))에서 발췌.

6) 연합뉴스 2006년 5월 18일자 인터넷판 기사[빙상연맹, 안현수 아버지에 '근신 1년']에서 발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이갑진)를 열고 바레인과의 예선 2차전(7월15일)과 인도네시아와의 최종경기(7월18일)에 앞서 두 차례 음주를 한 이운재에 대해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내년 11월1일까지)과 축구협회 주최 대회(FA컵과 일반 A매치) 출전정지 3년, 올 연말까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운재와 한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한 우성용·김상식·이동국에 대해선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과 축구협회 주최 대회 출전정지 2년, 사회봉사 40시간에 처했다. (중략)

이 위원장은 K-리그 출전 정지를 징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선 “국가대표로 차출돼 있는 선수들 관리는 대표단 책임으로 소속팀과는 관계가 없어 책임 한계를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벌위가 4명 선수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축구협회가 선수 징계와 관련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사회봉사명령은 사법기관이 범피자에게 무보수로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72년 영국에서 시작돼 한국에는 1989년 도입된 제도다. 상벌위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에게 개인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sup>7)</sup>

## II.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의미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대내외적 목적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관에다가 사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변호사협회가 非違가 있는 회원변호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자신이 속한 노조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을 제명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단법인이 자신의 구성원인 사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사단의 懲戒權(Vereinsstrafgewalt)라고 한다.<sup>8)</sup>

이와 같은 사단의 징계권범리는 스포츠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팀에 대해서 일정기간 출전을 금하는 조치를 내리거나, 대회 중에 심판에게 폭력을 행사한 선수나 지도자 또는 임원에 대해서 출

7)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7년 11월 3일자 기사 [술 먹은 죄 ... 내년 월드컵 예선, 올림픽 못 뛴다] ([http://spn.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03/2007110300199.html](http://spn.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03/2007110300199.html))에서 발췌.

8)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社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징계권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권리능력없는 사단을 포함)에 한해서 문제된다. 다만 재단법인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상의 징계권의 행사로서,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단체와 그 구성원인 사원 사이의 이해충돌의 문제와는 다르다.

전정지나 자격정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스포츠단체가 소속팀이나 선수에 대해서 이러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스포츠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헌법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스포츠단체는 그 조직의 설립이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단체의 자체적인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즉 스포츠단체에 있어서도 이른바 社團自治(Vereinsautonomie)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포츠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자율적인 定款을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정관에 스포츠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소속경기팀이나 선수에 대해서 징계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그 社員에 해당하는 소속경기팀이나 선수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단체가 징계권을 가지는 이유는 일종의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징계를 받는 경기팀이나 선수에게는 스포츠단체가 부과하는 징계에 따라 팀의 존립이나 선수로서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경우에도 사단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인 社團自治(Vereinsautonomie) 내지 定款自治(Satzungsautonomie)의 이념이 적용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이 소속팀이나 선수에 대해서 내려질 수 있는 근거, 뒤집어서 말하자면 징계를 받게 되는 소속팀이나 선수는 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가 단체의 정관에 기초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적정성을 넘어선 조치인 경우에도 그러한 징계권의 효력은 존중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달리 말하자면 비록 경기팀이나 선수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조치가 과도하더라도 그 징계조치가 스포츠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社團自治 내지 定款自治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징계조치에 대해서 다룰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정관에 기초한 스포츠단체의 징계행위는 사단내부의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의 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인지, 나아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자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의 징계행위에 대한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문제된다. 이것은 곧 스포츠단체가 그 구성원인 경기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징계권의 근거와 행사요건 및 그

9) 스포츠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08, 70면 이하 참고.

한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스포츠단체의 징계는 그 구성원인 소속팀이나 소속선수에 대해서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스포츠단체가 소속선수에 대해서 내리는 징계문제와 그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Ⅲ.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

#### 1. 논의의 의미

스포츠단체가 선수에 대해서 내리는 징계권이 정당화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또한 징계권행사의 적정성여부를 둘러싸고 선수와 스포츠단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법원 등 제3의 기관이 간여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와 결부된다. 스포츠단체도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단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스포츠단체의 그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형편이고 판례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독일의 상황을 비추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사단의 징계권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징계권의 내용을 담은 정관의 작성은 일종의 社團自治의 구체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정관작성을 통한 사단자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이것은 정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2. 학설

##### (1) 規範說

사단의 정관을 일종의 규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사단은 정관작성을 통하여 자신의 조직에 대한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범적으로 보장받게 되며 그에 따라 사원은 단체에의 자발적인 가입을 통하여 단체의 징계권에 스스로 복종(Unterwerfung)한 것이므로, 사단의 징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sup>10)</sup> 이는 마치 행정법상 특별

10) Meyer-Cording, Die Vereinsstrafe, 1957, S. 46 ff. 오늘날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하

권력관계와 유사하게 사단과 사원의 관계는 민사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독일의 초기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좇아 법원이 사단징계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하게 되면 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법심사에 소극적이었다.<sup>12)</sup>

## (2) 契約說

계약설은 사단의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다. 계약설은 규범설에 대해서 정관을 일종의 규범으로 보는 것은 단체의 자의적인 입법권능을 인정하는 셈으로, 그러한 별종의 “규범”에 근거한 사단의 징계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계약설에 의하면 원시정관은 단체의 설립자들 사이의 다면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특수한 계약이고, 정관설정이후의 사단에 가입하여 사원이 되는 것은, 규범설의 주장처럼 단체의 정관규범에 자신을 복종(Unterwerfung) 시킴으로써 단체의 징계권행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를 통하여 징계규정을 포함한 사단과의 모든 규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의미한다.<sup>13)</sup>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본다면, 정관규정에 따른 의무의 위반은 바로 계약위반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사단의 징계권의 행사도 계약위반에 따른 효과의 청구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사단의 징계효과는 일종의 契約罰(Vertragsstraf)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 (3) 私見

규범설의 원류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 19세기말에 實在的 團體人格說을 주장한 기르케(Otto v. Gierke)로 소급되는데,<sup>15)</sup> 그 당시에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

---

는 견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정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修正規範說의 입장에서 사단 징계권을 단체법상 독자적인 제도로 보는 견해는 오히려 오늘날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예 Heidel/Lochner, BGB-AnwaltKomm, § 25, Rz. 28; Schwarz-Bamberger/Roth, § 25 Rn. 42; Reuter-MünchKomm, § 25 Rn 38. 등).

11) Meyer-Cording, Die Vereinsstrafe, S. 70 ff.

12) RG JW 1906, 416 f.

13) Hadding-SoergelKomm, § 25 Rn. 38,

14) Flume, Juristische Person, S. 328 ff.; Larenz/Wolf, AT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2004), S. 203.; van Look, Vereinsstrafen als Vertragsstrafen, Berlin 1999, S. 58 ff.; Hadding-SoergelKomm, § 25 Rn. 38.; 박종희, 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의 법적 기초와 사법심사의 범위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7호(1998), 357면 이하.

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社團自治의 이념이 강한 톤으로 주장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사단의 자체적인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정관을 일종의 자치적인 규범으로 봄으로써,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규범설에 의하면 일견 社團自治라는 이념도구가 단체에 간섭하려는 공권력을 막아내는 훌륭한 방패의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다른 면에서는 구성원(특히 소수사원)에게 가해지는 단체의 불합리한 제재를 은폐하는 장막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사단자치의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단체의 설립이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오늘날에는 社團自治를 과거처럼 단체의 활동에 개입하려는 국가의 공권력에 맞서기 위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사단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자율적인 이해관계조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sup>16)</sup>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사단의 정관도 단체를 구성하는 사원들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17)</sup> 그것은 물론 통상의 쌍무적인 계약(Synallagma)과는 달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 사이의 다면적인 계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3.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단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일종의 계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관의 법적 성질도 스포츠단체에 소속해있는 경기팀이나 선수들이 맺은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스포츠단체의 설립단계부터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기팀이나 선수들이 정관작성에 간여하였다면 이들의 계약관계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정관작성 후(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체설립 후) 새로이 소속단체에 가입한 경기팀이나 선수들의 계약관계성은 다소 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입이전에 작성

15) 특히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I, Leipzig 1895, S. 535 등.

16) 박종희, 전게논문 357면은 “단체의 자율(Vereinsautonomie)이란 법규범 제정권한적인 의미에서의 자율(이를 달리 표현하면 공법적인 자율을 지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내부 사항의 규율측면에서 내용적 형성의 자유, 즉 사법상의 의미에서의 자율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을 일종의 自治法規로 본다(大判 2000. 11. 24. 99다12437 참고).

된 정관도 일종의 약관의 일종으로 보아 소속단체의 가입을 통하여 약관(즉 정관)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계약관계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단체의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본다면, 그 정관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징계는 일종의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즉 契約罰)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의 문제도 治外法權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司法府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IV.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절차·효과

##### 1. 징계권행사의 要件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懲戒權에 관한 合意

사단의 징계를 일종의 계약벌의 일종으로 본다면,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를 위해서는 단체와 구성원(소속팀 또는 선수) 사이에 계약상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스포츠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의 설립당시에 원시정관의 작성에 동의하거나 혹은 이후 설립이 완료된 단체의 가입시에는 입회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만약 징계규정이 원시정관의 성립이후에 정관변경을 통하여 신설된 경우에는 그러한 징계규정의 설치에 반대하는 구성원의 의사는 多數決原則에 의해서 대체된다.<sup>19)</sup>

###### (2) 明確性の 原則

선수에 대한 모든 징계사항은 부속규정을 포함하여 정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sup>20)</sup> 정관상의 기재를 통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징계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러한 위반행위의 결과로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18) Hadding-SoergelKomm, § 25 Rn. 39.

19) Hadding-SoergelKomm, § 25 Rn. 39.

20) Karsten Schmidt, Gesellschaftsrecht, § 24 V 3. d).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21)</sup> 이것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지만, 사단의 징계행위는 형법처럼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테면 정관에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 행위”, “연맹에 해를 입히는 행위”,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같은 추상적인 징계요건의 기술도 허용된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그러한 추상적인 징계요건에 저촉되는 지를 정관의 부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해석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반대로 추상적 징계요건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sup>22)</sup>

이 원칙의 적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별위원회 규정 제 15조(징계대상) 3호는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상별 규정 제 18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제 19조에서는 1항에서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징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징계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동 상별규정의 별지 [유형별 징계 기준]에서 선수의 경우 ① 경기장 무단 난입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하, ② 시설 및 기물 파괴에 대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3년 이하 및 벌금, ③ 폭력조장, 선동 및 오물투척에 대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계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 (3) 遡及適用의 禁止

스포츠단체의 정관상 징계의 대상과 내용은 사원의 해당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sup>23)</sup> 즉 선수의 특정행위 이후에 징계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소급적용이 금지되는 것은 이미 완료된 선수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정관개정을 통하여 징계하는 이른바 眞正 遡及效(echte Rückwirkung)의 경우에 한하고, 선수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징계하는 이른바 不眞正 遡及效(unechte Rückwirkung)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sup>24)</sup>

### (4) 선수의 歸責事由

21) BGHZ 21, 370, 373; BGHZ 47, 172, 175 ff.; BGHZ 55, 381, 385; BGH NJW 1984, 1355.

22) BGHZ 47, 172, 178 = DB 1967, 855 = NJW 1967, 1268.

23) BGHZ 55, 381, 385.

24) Schwarz-Bamberger/Roth, § 25 Rn. 46.; Reichert, Handbuch Vereins- und Verbandsrecht, Rn. 2694.

스포츠단체가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선수에게 歸責事由가 있어야 한다.<sup>25)</sup> 징계 행위를 계약위반에 따른 契約罰로 이해한다면, 사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sup>26)</sup> 즉 선수가 행한 징계대상인 비위행위가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이를 테면 보디빌딩협회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보디빌더 선수에 대해서는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더라도,<sup>27)</sup> 만약 경쟁자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몰래 금지약물을 탄 음료수를 선수가 모른 채 마셔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선수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회의 출전자격은 정지되더라도 도핑결과를 이유로 제명은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선수가 관절염약을 복용하였는데, 그 속에 금지약물성분이 있어 이로 인해 도핑양성반응이 나왔다면, 비록 선수의 고의성은 없더라도 과실은 인정되므로 스포츠단체는 그 선수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출전을 앞둔 선수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성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혹시라도 있을 약물의 양성반응을 미리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에 선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sup>28)</sup>

##### (5) 懲戒事項의 適正性

스포츠단체의 정관에 기재된 징계사항이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부당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sup>29)</sup> 즉 스포츠단체의 자율적인 정관에 따른 징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법질서나 공서양속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이를테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수에 따라 징계내용이나 징계수

25) Hadding-SoergelKomm, § 25 Rn. 50; Heidel/Lochner, BGB-AnwaltKomm, § 25, Rz 40; Schwarz-Bamberger/Roth, § 25 Rn. 47; Reuter-MünchKomm, § 25 Rn 45.

26) Hadding-SoergelKomm, § 25 Rn. 50.

27) 대한보디빌딩협회는 2007년 1월 24일 이사회를 열어 작년 전국체전 사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경기도협회 소속 일반부 선수 2명을 영구제명하는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2007. 1. 24. 연합뉴스 인터넷판 기사 참고).

28) 그러나 사례에서 선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 그 징계가 적절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선수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징계사항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징계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29) Karsten Schmidt, Gesellschaftsrecht, § 24 V 3. d)

준을 달리하는 것은 선수에 대한 同等待遇의 原則에 반하며, 위반행위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조치는 比例性의 原則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선수층을 무단이탈한 선수들에 대해서 스포츠단체는 선수마다 차별적으로 징계수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sup>30)</sup> 또한 경기력에 관계없는 성형수술을 하여 며칠간 훈련에 불참하게 된 선수에 대해서 “대표팀 전체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2년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比例性의 原則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조치로 상식적인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수에 대한 징계는 그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하여야지, 그 징계를 통해 다른 선수에게 까지 심리적 위압을 가하기 위해 이른바 ‘시범케이스’식으로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 2. 징계권행사의 對象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징계대상이 된다. 즉 ①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되거나 이첩된 경우, ②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각종 대회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④ 각종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 받은 경우 등이 그것이다.

사단의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원에게만 행사될 수 있다.<sup>31)</sup> 따라서 선수가 스포츠단체로부터 탈퇴하여 사원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스포츠단체는 선수로 있었던 당시의 행위를 이유로 탈퇴한 선수에 대한 징계행위를 내릴 수 없다. 또한 선수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선수가 탈퇴하여 사원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32)</sup> 그러나 사원지위를 상실한 전직 선수에 대해서도 社員權과 관계없는 징계조치(예, 과태료의 부과, 출입금지조치)는 허용된다.

문제는 스포츠단체가 스포츠단체시설의 이용자 또는 스포츠단체행사의 참가자 등, 사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스포츠단체의 정관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스포츠단체의 사원아닌 제3자

30) 물론 선수에 따라서 상습성이 있는 선수와 처음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선수에 대한 징계수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처음이고 같은 직책에 있는 선수라고 가정한다면 같은 징계처분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31) BGHZ 29, 352, 359 = DB 1959, 428 = NJW 1959, 982.

32) RGZ 122, 266, 268.

에 대한 징계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스포츠단체의 정관상 징계규정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조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징계합의는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계약에 동의하거나 행사참가자가 스포츠단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때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스포츠단체의 정관상 징계규정을 제3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임원에 대해서 폭행한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까지 스포츠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스포츠단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징계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

### 3. 징계권행사의 節次

#### (1) 징계관할기구

스포츠단체내의 어떤 조직이 사원에 대한 징계관정을 관할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단체에 따라 명칭은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정관에 선수에 대한 징계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상벌위원회」 등을 두는 경우에 그러한 기구가 선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만약 정관에 선수징계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규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스포츠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社員總會가 징계관할기구가 된다.<sup>33)</sup> 또한 스포츠단체는 정관에서 선수징계에 관해서 단체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제3자가 관할하도록 정할수도 있다.<sup>34)</sup> 따라서 예컨대 스포츠단체가 선수징계에 관한 사항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한편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벌위원회의 위원 중에 징계대상선수의 친족이거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해당사건의 징계심사, 의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 (2) 징계절차

통상의 징계절차는 해당선수에 대한 懲戒請求 → 懲戒審議 → 懲戒決定의 순으로

33) Hadding-SoergelKomm, § 25 Rn. 45; Heidel/Lochner, BGB-AnwaltKomm, § 25, Rz 42.

34) BGHZ 128, 93, 107 f.

진행된다. 선수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상벌위원회에 징계청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징계일정을 정하고 해당선수에게 징계절차에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징계심의과정에서 상벌위원회는 해당선수에게 어떤 행위 때문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스포츠단체의 정관(즉 상벌규정)상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고지해주어야 한다. 그에 따라 해당선수에게는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징계조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서면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해명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징계과정에서 해당선수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려진 징계결정은 효력이 없다.<sup>35)</sup> 상벌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징계처분은 해당선수에게 통보되고,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심사요구가 없을 때에는 상벌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대해서 통상 스포츠단체의 이사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해당선수가 재심사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에 대한 재심은 통상적으로 스포츠단체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만약 이사회의 징계재심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선수는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정내용을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4항).

#### 4. 징계권행사의 效果

이상의 징계요건과 징계절차에 따라 스포츠단체는 해당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나 내용은 단체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중징계로 資格停止, 出戰停止, 除名을, 경징계로 警告와 勤愼으로 구분한다. 그러한 징계종류 외에도 스포츠단체는 罰金, 免職, 減俸 등의 징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로 반인격적인 것(예, 體罰)이나 국가형벌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예, 拘禁) 등은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sup>36)</sup> 또한 징계의 종류는 스포츠단체의 정관 또는 징계관련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단체는 명시된 징계종류에 한해서 징계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상벌

35) BGHZ 29, 352, 355 = NJW 1959, 982; BGH NJW 1980, 443 f.

36) van Look, Vereinsstrafen als Vertragsstrafen, S. 127 ff.

위원회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社會奉仕命令」 등의 징계를 내리지는 못한다.

선수의 비위행위가 스포츠단체에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시에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사단이 해당사원에 대해서 취하는 징계조치와 국가에 의한 형벌부과는 그 적용원리를 달리하는 것이므로(전자는 私的인 契約罰이고 후자는 公的인 刑罰), 이른바 二重處罰禁止의 原則에 해당하지 않는다.<sup>37)</sup>

스포츠단체의 징계절차는 사단의 자체적인 계약벌의 집행과정일 뿐이므로, 국가의 정식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징계절차에 비록 징계위원회의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포츠단체가 해당선수로 하여금 정식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 1항)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V.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권분쟁의 해결방안

사단이 소속사원에 대하여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서 해당사원이 징계의 정당성이나 적정성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사단은 조직 내에서 재심절차를 두거나 상급단체에 이의절차를 두고 있지만, 재심이나 이의절차에서도 불복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과거 독일에는 사단의 징계권행사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독일의 초기 판례는 사단자치의 이념을 강조하여 사단징계권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법원이 사단징계에 관한 모든 사실적 및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sup>38)</sup> 우리나라의 판례도 여객운송조합의 조합원의 제명처분에 대해 조합의 자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9)</sup> 그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발생하는 징계권분쟁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될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

37) BGHZ 21, 370, 374; BGHZ 29, 352, 356. 그러나 변호사법상 업무정지명령제도와 과태료처분제도도 이중처벌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吳宗根, 변호사징계제도,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11집, 2002, 346면 이하 참고.

38)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정승재, 전제논문, 125면 이하 참고.

39) 대법원 1994. 05. 10. 선고, 93다21750판결.

결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수징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한 징계분쟁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스포츠단체의 징계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는 까닭에서 일까? 이미 서두에서 제시한 몇몇 사례에서도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운용에 여러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스포츠 징계판결을 찾기 힘든 이유는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분쟁에 대해서 구태여 법원의 소송으로 가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스포츠계의 독특한 위계질서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선수가 자신이 속한 스포츠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수로서의 생명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좀처럼 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수들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비록 억울하다더라도 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수용하고 감내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동선수 및 보호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운동선수의 사회적 대우가 개선되고 스포츠산업의 경제적인 가치가 보다 높아지는 한, 선수들은 과거와 같은 위계질서문화에 순종적일 수는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선수징계의 분쟁은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선수가 징계에 불복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법원에 징계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다른 이익단체의 구조와는 달리,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에는 독특한 지도·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선수들 사이에는 팀웍이 매우 중요하므로,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갈등문제는 흑백을 가리는 문제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동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편으로는 스포츠계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리적 체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스포츠단체와 선수와의 징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VI. 맺음말 : 약간의 제언

스포츠단체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사단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정관 또는 부속규정에서 소속선수에 관한 징계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한 징계규정에서 징계사항이나 징계대상 및 징계종류 등이 명확히 기

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려진 징계조치는 스포츠 단체와 선수와의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스포츠단체는 향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불확실하게 규정된 징계관련규정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징계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라는 제도 자체가 타인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징계의 심의나 결정과정에서도 법리적인 문제를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참여하여 징계절차에서 선수의 권익에 위해를 주는 것은 없는지 가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예컨대 ‘시범케이스’ 식의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막는 것이 결국은 스포츠단체의 위상을 보전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중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단체는 자체적으로 상벌위원회를 두어 징계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정관에 징계판정기관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스포츠단체로서는 골치 아픈 징계판정으로 인한 조직 내의 갈등이나 사회적 여파의 부담을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스포츠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도 현재는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이의신청의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현실적인 사정과 범조계의 법리적 식견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징계권, 사단자치, 정관자치, 스포츠단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박종희, 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의 법적 기초와 사법심사의 범위 -독일의 학설  
과 판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7호(1998), 347-370면.

손석정, 스포츠법학, 서울 태근, 2000.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AnwaltKommentar BGB, Band 1: Allgemeiner Teil mit EGBGB, Bonn 2005.

Flume, Werner,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Erster Band, Zweiter Teil: Die  
juristische Person, Berlin u.a. 1983.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München 2004.

Look, Frank van, Vereinsstrafen als Vertragsstrafen, Berlin 1999.

Meyer-Cording, Die Vereinsstrafe, Tübingen 1957.

Reichert, Bernhard, Handbuch Vereins- und Verbandsrecht, 10. Aufl., München u.a. 2005.

Schmidt, Karsten, Gesellschaftsrecht, 4. Aufl., Köln u.a. 2002.

Soergel,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Stuttgart u.a. 2000.

<Zusammenfassung>

## Rechtsfrage um die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HOYOUNG SONG\*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Rechtsfrage der Vereinsstrafe, welche hauptsächlich vom Sportsverein den Sportlers auferlegt wird.

Zur Einleitung dieser Thematik führt der Verfasser im Kapitel I einige berühmte Fälle zu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an.

Kapitel II beschäftigt sich mit dem rechtlichen Sinn de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Dabei wird Anwendbarkeit und seine Grenze des Grundsatzes der Vereinsautonomie diskutiert.

Im Kapitel III versucht der Verfasser, die Rechtsnatur der Vereinsstrafe aufzufassen. Das hängt mit der Rechtsnatur der Vereinssatzung zusammen. Der Verfasser behauptet dabei, dass die Rechtsnatur der Vereinssatzung als ein kollektiven Vertrag anzusehen ist, damit die unrichtige Vereinsstrafe unter der Gerichtsbarkeit gestellt wird.

Kapitel IV befaßt sich mit Voraussetzung, Gegenstand, Prozess und Folge de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Dabei werden die Rechtsprinzipien hervorhoben: Bestimmtheitsgrundsatz, Rückwirkungsverbot, Verbot der Doppelbestrafung, Verhältnismäßigkeit und Verschuldensprinzip.

Im Kapitel V und zum Schluß Kapitel VI schlägt der Verfasser als einen rationalen Lösungsweg für Streitigkeit über Vereinsstrafe zwischen dem Sportsverein und den Sportlers ein Schiedsgericht von KSAC vor.

Stichwörter : Vereinsstrafgewalt, Vereinsautonomie, Satzungsautonomie, Sportsverband, KSAC(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

\* 학술대회 발표논문임.

---

\*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Law.